

##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1. 15 동두천시장이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 1. 15
- 다. 상정일자 : 제1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동 조례에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에 관한 심의를 동두천시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두천시건축위원회의 위원 20명중 미술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고 위원의 대부분이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어 미술장식품의 심도있는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미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한 심의를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미술장식의 가격, 미술장식의 예술성,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등으로 정함.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정함.
-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는 물론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장식품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